

“특점음원사용권으로 제3자 대상 채권 침해 주장 못해”

Q 음원 모바일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동일곡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음원사용의 분배는?

여기서 동일곡의 권리자는 '저작권자'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권리자가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할 때 저작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권리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음원을 사용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다만 권리자들 사이에서 대표자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4항, 제15조 제2항)

아울러 권리자들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권리자가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배분된다. 그러나 각자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Q 특점음원사용권의 효력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음원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2조 제2항)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42조 제3항)

또한 특점음원사용권을 가진다고 하여 법규정상 특별히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른 사용권을 갖게 된다.

한편,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특점음원사용권은 저작권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양수인에게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할 때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Q 보유 중인 특점음원을 경쟁사나 개인이 무단으로 불법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인 대처 방안은?

민사상 경쟁사나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많지 않다. 특점음원사용권은 저작권자 사이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계약상 권리를 저작권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제3자를 상대로 채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경쟁사나 개인이 피해를 주려는 등의 의도로 침해행위를 했다면, 이를 입증해 경쟁사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경쟁사나 개인에게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이를 위해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이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91조 제2항)

월간 「디지털콘텐츠」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는 건강한 DC 유통환경 조성 캠페인 의 일환으로 DC기업이 경영일선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음악(음원)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음원사용의 분배와, 경쟁사나 개인이 무단으로 불법 사용할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집자 주